

---

#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

---

2019. 12.



## ☐☐ 목 차 ☐☐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사학혁신의 현주소 .....	2
III. 사학혁신 비전과 과제 .....	4
IV. 사학혁신 추진과제 .....	5
1.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.....	5
2.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.....	7
3.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.....	9
4. 사학 교원 권리보호 지원 .....	11
5. 교육부 자체 혁신 .....	13
V. 향후 일정 .....	17
【붙임 1】 추진과제별 현황 .....	18
【붙임 2】 「대학혁신지원방안」의 규제개선 과제 .....	20

## I 추진 배경

### □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아 사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 필요

- 초·중·고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.2%(11,657개교 중 1,655개교)이나, 고등학교는 사학이 40.2%(2,356개교 중 946개교) 수준
- 특히, 고등교육기관은 사립이 86.5%(430개교 중 372개교)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 필요

### □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필요

- 정부는 사립 초·중등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합보조금, 목적사업비 등을 통해 운영비·인건비 등으로 연간 7조원\* 지원 중
  - \* '17년 결산, 사립학교회계 수입총액 10조 9,956억원 중 ① 정부지원 7조 3,220억원(66.6%), ② 학부모부담 3조 249억원(27.5%), ③ 기타 6,487억원(5.9%) (KEDI)
- 사립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간 7조원\* 지원 중
  - \* '17년 결산, 전체대학지원 13조 465억원 중 7조 138억원(53.8%)(사학진흥재단)

### □ 사학 비리 엄단 등 사학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부응

- 사학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, 일부 사학의 부정·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
  - \* '19. 6-7월 각종언론: 사립대학 횡령·회계부정 최소 2천6백억원, 사학혁신위 "부정비리 인사 퇴출하는 사학법 개정 필요"
- 이에, 사학 감사체제 유지, 법령 개정 등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학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필요

[ 대통령 지시사항(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/19. 6월) ]

- ① 회계·채용·입시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관리
- ②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
- ③ 횡령·배임으로 해임된 임원도 일정 시간 경과 후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대학을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처가 필요

## II 사학혁신의 현주소

### □ 사학혁신위,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등을 통해 사학비리에 신속 대응

- 사학혁신위원회 : '17. 12월 ~ '19. 6월, 15회 개최
  - 교수·법조인·회계사·고등교육정책관 등으로 구성, 사학비리 근절방안 논의 및 10대 제도개선안 권고('19.7.3)
  - ※ 사학혁신추진단 : 고등교육정책실장 주재, 관련 국과장 참여
- 교육신뢰회복추진단 : '19. 1월 이후, 14회 개최
  - 부총리 주재 차관, 3실장 등으로 구성, '19. 10월 기준 중대 교육비리 및 제도개선 등 14차 회의 42건 논의 후 보도자료 발표
- 전국시·도교육감협의회 : '18. 11월~'19. 2월, 16개 과제 제안
  -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

### □ 현정부 출범이후 사학비리 등에 대한 조사감사 집중 추진

- 지난 10년간('08.3월~'17.3월) 380교를 감사하여 3,106건을 지적하였으나, '17. 9월부터 '19.1월(1년5개월)까지 65개 대학에 755건\* 지적
  - \* ① 임원 84명 임원취임승인취소, ② 신분상 조치 2,096명, ③ 재정상 조치 258억, ④ 고발·수사의뢰 136명

《 지난 10년간 감사 실적과의 비교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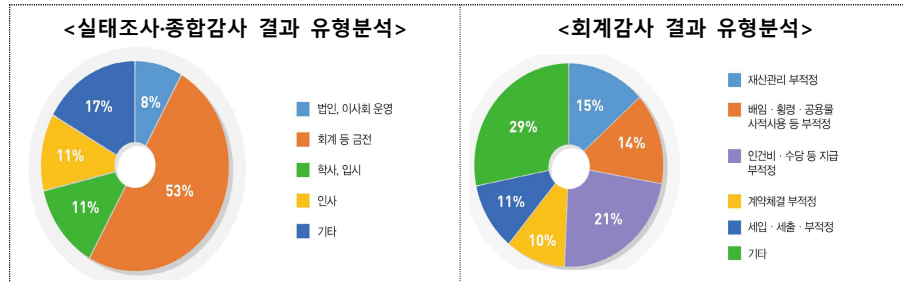
구 분	사학혁신위원회/추진단 구성 이후 조치실적 ('17.9.~'19.1., 1년 5개월)	지난 10년간 조치실적* ('08.3.~'17.3.)
감사대상	65개교	380개교
적발 사례	755건	3,106건
고발/수사의뢰	99건	205건
신분상 조치	2,096명	9,620명

\* 고등교육정책실 주관 실태조사 실적은 제외

-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천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16개교에 대해 '19년 7월부터 '21년도까지 종합감사 예정
- 중앙부처 최초 시민감사관 및 정부합동 감사단 구성·운영

□ **최근 사학비리의 종합회계 감사 지적사항의 유형별 결과**

- **종합감사(35개교, 441건)**는 ① 회계 등 금전(233건, 52.83%), ② 인사(50건, 11.33%), ③ 학사·입시(46건, 10.43%), ④ 법인·이사회 운영(37건, 8.39%) 순
- **회계감사(30개교, 314건)**는 ① 인건비·수당 등(66건, 21.01%), ② 재산관리(46건, 14.64%), ③ 배임·횡령·공용물 사적사용 등(44건, 14.01%), ④ 세입·세출(35건, 11.14%), ⑤ 계약체결(30건, 9.55%) 부적정 순



□ **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에도 일부사학의 비리제보는 지속 발생**

- 교육부 “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”는 ‘19. 1. 1. ~ 10. 31. 현재 159건의 교육 비리를 접수하여 조사 등 진행 중

\* 국민신고센터 유형별 접수현황 (단위 : 건)

구분	입시·학사	조직·인사	예산·회계	법인·이사회	기타	합계
건 수	32	31	28	19	49	159

- 권익위에 설치하여 협업으로 운영하는 “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”는 6. 10. ~ 10. 31. 동안 단순민원 등 종결(137건)\* 외 223건 처리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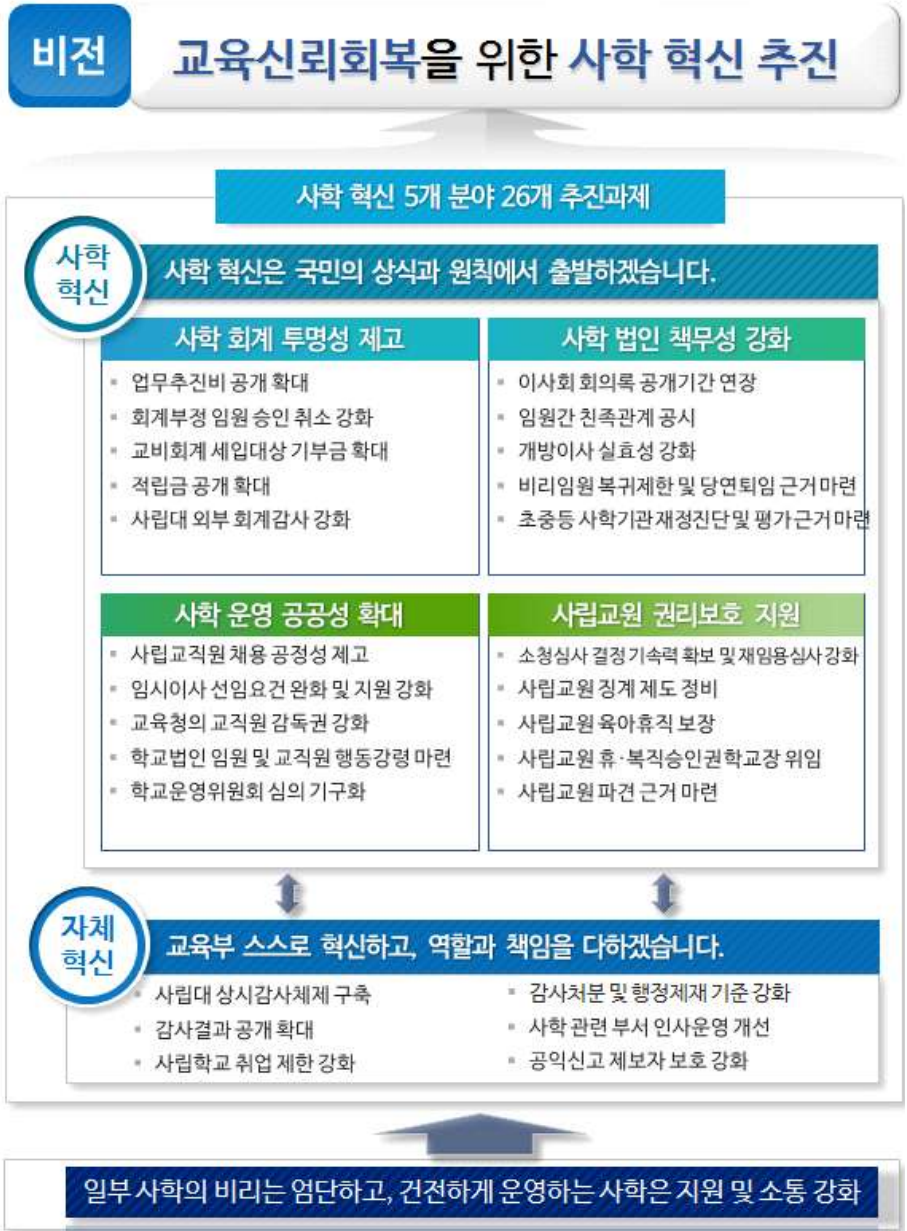
\*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 유형별 접수현황 (단위 : 건)

구분	인사·채용	교비·법외회계	입학·학사	보조금 부정수급	기타	합계
건 수	78	53	22	7	63	223

\* 단순민원, 의혹제기, 중복신고 등은 137건으로 접수단계에서 종결

- ❖ 따라서, 사학부정·비리에 대한 엄정한 조사·감사 기초를 유지하는 한편,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 필요
- ❖ 사학혁신위원회, 시·도교육감협의회,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를 통해 발굴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조속 추진

III **사학혁신 비전과 과제**



## IV 사학혁신 추진과제

### 1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

#### 1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

- (필요성) 학교법인 임원·학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임원·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
- (내용) 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총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완료('19.6월), 이행 여부 전수 조사('19.9월) 후 미이행교 감독 추진  
② 이사장, 상임이사 등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기관장(총장)	- "이사장, 상임이사"로 확대

#### 2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

- (필요성) 임원 취임승인 취소가 되는 회계부정·비리의 기준 금액 및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임원의 책무성 강화 필요
- (내용) ① 1천만 원 이상 배임·횡령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,  
- ②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을 낮춰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「사립학교법시행령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재산 횡령 - 임원취소기준: 수익용기본재산 30% * 고등학교 이하는 50%	- 1천만원 이상 재산 배임·횡령 - 임원취소기준: 수익용기본재산 10% * 고등학교 이하는 20%

#### 3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

- (필요성) 기부용도 미지정 기부금, 학교구성원의 이용·사용 관련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는 사례 발생
- (내용) 기부용도 표시가 없거나,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되도록 「사립학교법시행령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용도 미지정 기부금 등 "법인회계" 처리	- 용도 미지정 기부금 등 "교비회계" 처리

#### 4 적립금 공개 확대

- (필요성) 국회\*, 언론 등에서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쌓기만 하고 학생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문제 지속 제기  
\* '18년 국정감사(김혜영 의원): 적립금의 교육 투자 유도 방안 마련 필요
- (내용)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시 교직원·학생 참여 의무화, 주기적 점검 및 정보제공 항목 확대, 홈페이지(접근성 보완) 개선 등을 위한 「사립학교법」 및 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등 개정

현 재	개 선(안)
- ① 심의회 위원 : 7명 이내 * 외부전문가 1명이상 - ② 적립액, 사용액만 공개 - ③ 사안 발생 시 실태점검	- ① 심의회 위원 : 15명 이내 * 교직원, 학생 1/3이상 참여의무화 - ② 사용계획 등 공개항목 추가 - ③ 연 1회 주기적 실태점검, 적립금의 교육비 전환 계획 조사

#### 5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

- (필요성) 학교법인이 회계법인 등을 자체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회계 부정이 확인된 법인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일정기간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
- (내용) 감사·감리 등에서 회계부정 등\*이 확인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최대 2년간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  
\* 교육부장관이 정한 회계규칙 위반 및 회계집행 관련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

현 재	개 선(안)
-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	- 회계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장관이 2년간 외부 회계감사기관 지정

## 2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

### 1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

- (필요성)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이 짧아 **이사회 의사 결정 적정 여부**에 대한 확인 어려움
- (내용)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「사립학교법시행령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3월간 공개	- 1년간 공개

### 2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

- (필요성)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**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** 및 임원·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필요
- (내용) ①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「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추진  
② 임원·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**교직원 수**를 공시하는 것으로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① 성명, 연령, 임기, 현직 및 주요경력 - ② <신설>	- "임원 간 친족관계" 추가 - "임원·설립자 친족관계 교직원 수" 공시

### 3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

- (필요성) 개방이사로 **설립자·기존임원** 등이 선임되어 외부임원 선임을 통한 **학교운영의 건전성 제고**라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
- (내용) ① **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,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,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**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「사립학교법시행령」 개정 추진  
② 정관이 정하도록 한 **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직과 운영·구성**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① 현행규정에 "정관"으로 위임 - ② 정관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사항 규정	- ① "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, 당해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 역임자 등을 선임대상에서 제외"하는 단서 신설 - ②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 개정

### 4 비리임원 복귀 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

- (필요성) 사학법인 임원은 교원\*에 비해 **결격 사유도 약하고, 결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책무성 확보 미흡**
- \* 「사립학교법」 제57조 사립학교 교원이 「교육공무원법」 상 결격사유(금고 이상의 형 확정, 횡령·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,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)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임
- (내용) ① 임원의 **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**하고,  
- ②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,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**임원의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**하는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① 국가공무원법 수준 * 파면 5년 경과, 해임 3년 경과 - ② <신설>	- ① 교육공무원법 수준 이상으로 강화 * 파면 10년 경과, 해임 6년 경과 - ② 당연퇴임 근거 마련

### 5 초·중·등 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 근거 마련

- (필요성)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따른 학교법인의 **책무성**을 확보하기 위해 **교육청의 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** 실시 근거 필요
- ※ 현재 11개 시·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 검토
- (내용) **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 실시 근거**를 마련하고, 이를 **전문성**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통해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시	- 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 실시 근거 마련

### 3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

#### 1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

- (필요성) ① 사립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규정한 반면, 사무직원은 관련 조항 부재로 친인척 채용 논란 등 지속 제기
  - ※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 : 사무직원의 정원·임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규칙(사립학교 경영자가 개인인 경우)으로 결정
- ②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교육감 위탁 실적은 지속 개선\*되고 있으나, 채용비리 등으로 사회적 신뢰 저하
  - \*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교육감 위탁률: '15(22.2%), '17(38.1%), '19.4월 기준(51.5%)
- (내용) ①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도 교원과 같이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하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  - ② 사립학교에서 교원 신규채용 시,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·공정성 강화 등 제도개선 마련

현 재	개 선(안)
- ① 학교법인별 채용절차에 따라 사립 사무직원 신규채용 실시 - ② <신설>	- ① 사립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채용 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 - ② 신규채용 시 투명성·공정성 강화 제도 개선

#### 2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

- (필요성) ① 현재 임시이사 선임 요건이 의결정족수를 '초과'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로 규정되어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임시이사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\*
  - \*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가 7명인 경우,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4인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도 임시이사 선임 불가
- ②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은 재정이 열악하여 구 재단측과 징계 처분 교원 등의 소송 제기가 많아 소송비 지원 필요
  - ※ 「사립학교법」 제25조 제5항 :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만 지원 가능

- (내용) ① 의결정족수 '이상'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  - ②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 외에 '소송비'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① 의결정족수 "초과" - ② 운영경비, 사무직원 인건비	- ① 의결정족수 "이상" - ② "소송비" 추가

#### 3 교육청의 교직원 감독권 강화

- (필요성) 채용비위, 평가비위 등 중대한 비리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 교직원에게 대한 사학의 미온적 징계로 교육 신뢰 저하
  - 특히,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·중등 교직원에게 대해서는 교육청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
- (내용) ① 중대 비리를 범한 교직원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안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이 미흡한 경우, 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
  - ② 사립 사무직원에게 대해서도 교육청이 징계·해임요구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① 법인에 사립학교별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·재심의 - ② <신설>	- ①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 재심의 권한 부여 - ② 교육청의 사무직원 제재 수단 마련

#### 4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

- (필요성) 학교법인 임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청렴의무 준수를 독려하고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기준 필요
- (내용)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을 통해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  - ※ 행동강령 내용 예시 : 사적 이해관계 신고, 사적 노무 요구 금지, 금품수수 금지 등

현 재	개 선(안)
- <신설>	- 학교법인별 행동강령 마련 의무화

##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

- (필요성)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학사운영, 회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 한계
- (내용) 사립학교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\*로 격상하도록 「초·중등교육법」 등 개정 추진
  - \* 학교 예·결산, 학부모경비 부담사항,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사항, 학교급식 등 심의
  - ※ 단, 학교현장 등 사학의 자율성과 관련된 사항, 인사 등 이사회 권한에 관련된 일부기능은 자문기구로 운영

현 재	개 선(안)
- 자문기구	-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

## 4 사립 교원 권리보호 지원

### 1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및 재임용심사 강화

- (필요성)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악의적 처분 반복, 장기간 재임용 심사절차 미이행 등 문제 지속 발생
- (내용)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및 재임용 심사 지도·감독 강화를 위해,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 가능하도록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개정 추진
  - 우선,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에 대한 인사업무 담당자 교육 및 재임용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 작성·배포(~'19.12.)

현 재	개 선(안)
- <신설>	-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

## 2 사립교원 징계 제도 정비

- (필요성)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징계 규율은 동일하게 적용 필요
  - 「사립학교법」 개정('19.4.)으로 징계양정 기준은 준용하나, 징계 종류 및 효력이 달라 동일하게 정비할 필요
    - ※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으로 공무원은 징계처분 중 '강등' 신설, 정직 시 전액 감액('15.12.)되나, 사립 교원은 법령 개정 지연으로 미적용
- (내용) 징계종류 중 '강등'처분을 신설(대학교원은 제외)하고, '정직' 처분 시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하는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공·사립 교원 간 징계 종류 및 효력 상이	- 동일한 징계 처분 적용을 위해 '강등' 신설 및 '정직' 시 전액 감액

## 3 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

- (필요성) 「사립학교법」에 휴직사유를 명시하고 그 기간은 사학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, 정관으로 휴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립 교원의 경우 휴직 신청에 있어 차별이 존재
  - ※ 육아휴직의 경우, 교육공무원은 법정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, 일부 사립학교는 정관에 따라 남자 1년, 여자 3년 등으로 휴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

< (참고) 육아휴직 교원 현황 (2019년 4월 교육통계 기준) > (단위: 명)

설립	전체인원	육아휴직 인원		
		계	여	남
국립	2,342	67 (100%)	52 (77.6%)	15 (22.4%)
공립	346,255	21,363 (100%)	20,078 (94.0%)	1,285 (6.0%)
사립	93,368	1,512 (100%)	1,306 (86.4%)	206 (13.6%)
계	441,965	22,942 (100%)	21,436 (93.4%)	1,506 (6.6%)

\* 조사대상 : 2018.4.2~2019.4.1 휴직신청자 기준 (기간제교원, 강사 제외)

- (내용) 저출산 문제, 일·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사립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휴직 기간 "정관" 위임으로 자체 실시	- 국공립 교원과 같이 육아휴직 3년 보장

#### 4 사립교원 휴복직 승인권 학교장 위임

- (필요성) 휴직·복직 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여 비효율 발생, 학교장 책임 경영체로 학교자치 강화 필요
- (내용)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의 휴·복직을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권만 "정관"으로 학교의 장에게 위임 가능	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도 휴·복직에 한하여 "정관"으로 학교의 장에게 위임 가능

#### 5 사립교원 파견 근거 마련

- (필요성)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, 교원-자녀 동일고교 근무 회피를 위해 사립 교원의 파견 근거 및 파견 중 신분·복무규정 마련
- (내용)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육공무원과 일관된 방향으로 마련하는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<신설>	- 파견 근거 및 파견자의 복무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

## 5 교육부 자체 혁신

### 1 사립대 상시감사체제 구축

- (필요성) 국민신고센터,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학비리에 적극 대처하고,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\*에 대한 신속한 감사 필요
- \* 전체대학 40%(110교)가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수감(4년제 60교, 전문대 50교)

- (내용) 회계감사의 탄력적 운영, 감사인력 자체 증원(3명) 및 외부인력(인력풀, 파견, 시민감사관) 활용 등을 통해 종합감사 확대
- ※ 감사대상교 확대 : 3교('18년) → 5교('19년) → 10교('20년)

- 사학감사 담당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(10명→20명)

※ 기존 감사단을 이분(4년제 담당, 전문대 담당)하여 연간 10교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, 이행관리팀 신설로 사후관리 강화

- 회계·채용 비리, 입시·학사 부정 등 사학의 비리 취약 분야에 선제적 대응

현 재	개 선(안)
- 종합감사대상 3교 → 사학감사인력 10명	- 종합감사 ('19) 5교→('20) 10교 → 사학감사인력 ('19) 13명→('20) 16명→('21) 20명

### 2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

- (필요성) 감사결과 처분 양정의 객관성·형평성 및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기준 강화 필요
- (내용) ① 사립대학 감사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형별 적정 「감사처분 양정기준」 마련
- ※ 감사처분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 → 처분자료 분석 → 양정기준 수립
- ② 학생수 감소로 행정제재 대상 대학의 상당수가 학생 충원율이 낮아 제재 실익이 없어 감사처분 미이행 행정제재 기준 강화
- ※ '20학년도 입학정원 5% 감축(4교) 및 입학정원 5% 모집정지(4교) 행정처분 대상 8개교 중 6개교(75%)가 충원율 90% 미만(89.2~23.1%)

현 재	개 선(안)
- ① <신설> - ② <보완>	- ① "감사처분 양정기준" 제정 - ② 감사처분 미이행 행정제재 기준 강화

### 3 감사결과 공개 확대

- (필요성) 그 간 개인정보 간접노출, 비리행태 모방, 수사·소송 등 공정성에 영향, 수감대학 비리집단 낙인 등의 이유로 감사결과를 요약 공개하였으나 국회, 언론, 민원인 등 지속적으로 감사결과 전문 공개 요구



-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**사학의 자정노력을 유도**하며 **감사의 공공성·투명성 강화**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 확대 필요

○ **(내용)** 종합감사, 회계감사, 특정감사에 한하여 재심의 결과 통보 이후 교육부 홈페이지에 **감사결과 전문 공개**

※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의 경우 종전대로 요약본 공개

- | 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</li> <li>②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만한 정보</li> <li>③ 감사·감독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·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</li> <li>④ 이름·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정보</li> <li>⑤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li> <li>⑥ 공개시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·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</li> </ul> |
|--|

- '19년도에 실시한 **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**부터 우선 적용하고,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 보완 후 '20년부터 **전면 실시**

현 재	개 선(안)
- 감사결과 요약본 공개	- 감사결과 전문 공개 원칙

#### ④ 사학 관련 부서 인사운영 개선

○ **(필요성)** 사립대 감사에 대한 **부실감사, 형식적인 처분, 전문성 결여 지적** 등에 따라 인적쇄신을 통한 **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필요**

※ 사립대학 관련 감사 부서와 정책·지원 부서간 인력이 바로 순환배치 되는 등 감사-지원부서 상호간 영향력 행사가 우려된다는 지적

○ **(내용)** ① 감사관실과 고등교육정책실의 **사학 관련 부서 근무\* 직후 상호 교차 배치**를 제한하는 「교육부 인사운영규정(훈령)」 개정 추진

\* 사립대학, 전문대학, 대학재정 관련 부서

- ② 감사조직 및 인력 증원 시 **전문성을 갖춘 공직 외 인사 임용\*** 확대

\* 회계 및 법무 분야 임기제공무원(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공무원)

현 재	개 선(안)
- ① <신설> - ② 감사관(검찰)	- ① 감사관실사학 관련 부서 상호 배치 제한 - ② 감사 조직 증원 시 외부 인사 임용 확대

#### ⑤ 사립학교 취업 제한 강화

○ **(필요성)** 사립대에 무보직교원으로 재취업 후, 실제 보직교수 업무를 수행, 퇴직 전 소속기관에 **영향력을 행사**하는 사례 등 발생

※ 교육청 등 퇴직공직자의 사립초·중등학교 취업 제한은 없어 **공정성 훼손** 우려

- **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**을 통해 **교육부 등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**

○ **(내용)**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① **사립 초·중등학교 및 법인** 까지 확대, ② **사립대학 무보직 교원**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\*하는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사립대학 보직교원	- 사립초중등학교 및 법인,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으로 확대

#### ⑥ 공익신고 제보자 보호 강화

○ **(필요성)** 사학 비리 신고자도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신고자 보호, 신변보호조치 등을 보장하여 **내부신고 활성화**

○ **(내용)**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 '공익 침해행위 대상법률'에 「사립학교법」,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포함하는 「공익 신고자 보호법」 개정 추진

현 재	개 선(안)
- 유아교육법, 자격기본법, 학교급식법,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284개 법률	- "사립학교법, 초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" 추가

## V 향후 일정

-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조치 : '19. 12월~
  - 시행령 등 행정 입법과제를 우선 추진하고, 법령 개정과제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조속하게 추진

구분	추진 과제
시행령 등 행정입법 (12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학회계) ①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, ②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기준 강화, ③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, ④ 적립금 공개 확대(사용계획, 연1회 점검 등)</li> <li>• (사학운영등) 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, ⑥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, ⑦ 개방이사 실효성(개방이사 자격), ⑧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(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)</li> <li>• (자체혁신) ⑨ 사립대 상시감사체제 구축, ⑩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, ⑪ 감사결과 공개 확대, ⑫ 사학 관련 부서 인사 운영 개선</li> </ul>
법률 발의된 과제 (9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학회계) ① 적립금 공개 확대(기금운영심의회 구성 시 교직원, 학생 참여 의무화), ②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</li> <li>• (사학운영등) ③ 비리임원 복귀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, ④ 교육청 교직원 감독권 강화(교직원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), ⑤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(직원 공개 채용), ⑥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및 재임용 심사 강화, ⑦ 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</li> <li>• (자체혁신) ⑧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, ⑨ 공익신고 제보자 보호 강화</li> </ul>
발의 예정 과제 (9개)	① 초중등 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 근거 마련, ②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, ③ 교육청 교직원 감독권 강화(직원 제재수단 마련), ④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, ⑤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(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), 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, ⑦ 사립교원 징계제도 정비(강등), ⑧ 사립교원 휴복직 승인권 학교장 위임, ⑨ 사립교원 파견 근거 마련

## 붙임 1 추진과제 현황

추진 과제	법령명	국회 발의 법안 현황	
<b>I.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</b>			
1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	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	-	
2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	사립학교법시행령	-	
3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	사립학교법시행령	-	
4 적립금 공개 확대	사립학교법/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대한특례규칙	의원 발의	
5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	사립학교법	의원 발의	
<b>II.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</b>			
1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	사립학교법시행령	-	
2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	친족관계 교직원 수	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	-
	친족 관계 고시	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	규제심사 중
3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	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	사립학교법	-
	설립자, 친족 등 제외	사립학교법시행령	-
4 비리임원 복귀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	사립학교법	의원 발의	
5 초중등 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 근거 마련	사립학교법	-	
<b>III.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</b>			
1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	직원 공개 채용	사립학교법	의원 발의
	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	사립학교법시행령	-
2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	사립학교법	-	

추진 과제		법령명	국회 발의 법안 현황
3	교육청의 교직원 감독권 강화	교직원 징계 심의위원회	의원 발의
		직원 제재 수단 마련	-
4	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	사립학교법	-
5	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	초·중·등교육법 사립학교법	-

#### IV. 사립 교원 권리보호 지원

1	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및 재임용 심사 강화	교원지위향상특별법	의원 발의
2	사립교원 징계제도 정비	정직·보수전액 감액	의원 발의
		강등	-
3	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	사립학교법	의원 발의
4	사립교원 휴복직승인권 학교장 위임	사립학교법	-
5	사립교원 파견 근거 마련	사립학교법	-

#### V. 교육부 자체혁신

1	사립대 상시감사체제 구축	-	-
2	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	감사처분양정기준 (지침)	-
3	감사결과 공개 확대	-	-
4	사학 관련 부서 인사운영 개선	교육부인사운영규정(훈령)	-
5	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	사립초·중고 취업제한	의원 발의
		사립대학 무보직 교원	의원 발의
6	공익신고 제보자 보호 강화	공익신고자보호법	의원 발의

## 붙임 2

## 「대학혁신지원방안」의 규제개선 과제('19.8.6.)

\* 「교육부-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」에서 규제 개선 과제 발굴('19.2~)

구분	현행	개선 추진(안)
정원 학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집단위(입학정원) 없는 학과 설치 불가</li> <li>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,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불가</li> <li>이동수업관련 규정이 있으나, 엄격한 운영 기준 등으로 활용 저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 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(입학정원) 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</li> <li>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,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허용 추진</li> <li>이동수업 운영 확대의 필요성 및 교육의 질 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개정 추진</li> </ul>
재산 회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처분재산의 대체 취득 계획 부재 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불가</li> <li>법인과 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 자산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폐기</li> <li>학교법인의 금전 차입행위(기채)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</li> <li>법인회계(회계연도 40일전)와 학교 회계(회계연도 20일전)의 예산 확정 기한 상이</li> <li>교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교지와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동일교지로 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% 법인은 대체 취득없이 재산 처분 허가</li> <li>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폐기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</li> <li>학교법인의 금전 차입행위(기채)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서 관할청 보고 사항으로 변경</li> <li>법인과 학교의 예산 확정 기한을 회계연도 20일전으로 일원화</li> <li>관계부처(국토부 등) 협의, 전문가 면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동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 추진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에서 교원 임용 시 관할청으로 7일 이내 임면보고 ※「고등교육법」개정으로 강사가 '교원'에 포함됨에 따라 임면보고 대상이 확대되어 7일 이내 임면보고 곤란</li> <li>최근 3년간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은 전문대학원 설립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전임교원 임용보고 서식 간소화를 통한 업무 부담 완화</li> <li>전문대학원 설립 조건을 최근 3년간 행정제재 미해당 대학에서 최근 1년간 행정제재 미해당 대학으로 완화 ※'20학년도부터 적용</li> </ul>